

#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2-5
----------	--------

제출년월일: 2002. 1.

제 출 자 : 김제시장

## 1. 개정이유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및 개정 등으로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가.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보완

나.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음성나환자집단촌 → 한센정착농원)

다. 농어촌특산단지를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제도 폐지

라. 주정차법 개정으로 조문 개정 (신고의무 → 통보의무)

마.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 및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토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개정안시달  
<전북도 세정13400 - 11069(2001.12.1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등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01.12.31-'02.1.20) : 특이사항 없음

##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김제시세의”를 “따라 김제시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중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15조중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16조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김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u>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따라 김제시세의</u> ----- -----<u>법령기능을 보완하고</u> <u>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u> <u>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u> <u>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u>지원을 위한 감면</u>)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u>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제4조(<u>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u>) <u>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u>----- ----- ----- -----</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u>종합토지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u></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 -----<u>종합토지세</u> <u>과세표준액</u>-----</p>





현행	개정안
<p>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p>	<p>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 ----- 통보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 ~ 3 (생략)</p>	<p>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p> <p>-----제12조제1항-----</p> <p>-----통보-----</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